

일반대학원학사예관한시행세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세칙은 성결대학교 대학원 학칙의 일반대학원(이하 “본 대학원”이라 한다) 학사에 관한 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공과정) <삭제: 2015.3.1.>

제 2 장 입학, 편입학, 재입학

제3조 (입학응시자격) 본 대학원의 학위과정별 입학 응시자격은 다음에 해당하는 세례교인으로서 건전한 복음주의 신앙을 가진 자로 한다.

1. 박사학위과정

가. 신학석사(M.Div. 및 M.A. 소지 Th.M.)학위 소지(예정)자

나. <삭제: 2016.1.4.>

다. 위의 사항에 해당자로서 출신 대학원 전공주임교수 또는 논문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라. 경영학과, 사회복지학과, 행정학과, 교육학과는 석사학위 취득(예정)자

2. 석사학위과정

가.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는 자

나. 외국에서 정규대학 과정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3. <삭제: 2006.10.1.>

가. <삭제: 2006.10.1.>

나. <삭제: 2006.10.1.>

제4조 (구비서류) 본 대학원의 입학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과정별로 다음의 서류를 소정기간 까지 본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박사학위(Ph.D.)과정 (개정 2008.3.1.)

1.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2. 대학 및 대학원 졸업(예정) 증명서 1부

3. 대학 및 대학원 성적증명서(전학년 성적) 1부

4. <삭제: 2006.10.1.>

일반대학원학사예관한시행세칙(2-2-2)

5. <삭제: 2017.10.01.>
6. 신앙고백서(소정양식) 1부 - (신학과 지원자) (개정2008.3.1.)
7. <삭제: 2006.10.1.>
8. 이력서 1부
9. 담임교역자 추천서 1부 - (신학과 지원자) (개정 2008.3.1.)
- ② 석사학위과정 (개정 2008.3.1.)
 1.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2. 대학 졸업(예정) 증명서 1부(개정 2006.10.1.)
 3. 대학 성적증명서(전학년 성적) 1부(개정 2006.10.1.)
4. <삭제: 2006.10.1.>
5. 본 대학원 전공교수 추천서 1부 (신설 2008.3.1.)

제5조 (전형방법) 과정별 전형방법 및 배점비율 등 세부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정한다(개정 2006.10.1.)

1. <삭제: 2006.10.1.>
2. <삭제: 2006.10.1.>

제6조 (편입학) ① 편입학은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 수를 제외한 결원에 한하여 허가하되 동일계열 출신자로 하며, 전형방법은 대학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정한다(개정 2006.10.1.).

- ② 편입학 학기는 편입 전 대학원에서의 정규등록 학기 수와 이수학점에 따라 대학원위원회의 편입사정에서 정한다(개정 2006.10.1.).
- ③ 편입학 학점인정은 전공주임교수의 제청으로 대학원위원회의 편입사정에서 정하되 최대 18학점을 초과하여 인정할 수 없다(개정 2016.10.1.).
- ④ 편입학 수업연한과 재학연한은 본 대학원에 편입학한 학기에 따라 적용한다(개정 2006.10.1.).
- ⑤ 편입학 등록금은 해당학기의 입학금, 수업료로 한다(개정 2006.10.1.).

제7조 (재입학) ① 재입학은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재적생 수를 제외한 결원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 ② 재입학 시 퇴학전 학점은 인정할 수 있다.
- ③ 재입학생 등록금은 입학금, 수업료로 한다.
- ④ 징계 제적자와 재학연한을 초과한 자는 재입학할 수 없다. 다만 재학연한 초과에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재입학 하고자 하는 과정 또는 학과(전공)가 폐지되었을 경우 재입학이 불가하다(개

일반대학원학사에관한시행세칙(2-2-2)

정 2008.3.1).

제8조 (입학허가) 입학허가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학전형 합격자를 선정하며 합격자는 소정 기간내에 등록을 할하여야 한다.

제 3 장 교과과정 및 이수

제9조 (교과과정) 본 대학원에 설치된 전공별 이수교과과정은 각 전공별 교과과정표에 의한다.

제10조 (교과의 이수) 각 과정별 최저이수요구학점은 다음과 같다.

① 박사학위과정(개정 2017.10.01.)

구 분	학 과	전 공	선 택	논 문	계
이수학점	신학과	27	15	6	48
	경영학과	36		PASS	36
	사회복지학과	36		PASS	36
	행정학과	36		PASS	36
	교육학과	36		PASS	36

1. 경영학과(신설 2008.3.1.)

가. 주 전공분야에서 3과목 이상 이수하고, 타 전공 3개분야 이상에서 각각 1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신설 2008.3.1.).

나. 석사학위가 경영학도가 아닌 비전공 출신자는 자기 전공분야 1과목, 타 전공분야 3과목을 학부 또는 석사과정에서 선수과목으로 이수하여야 한다(신설 2008.3.1.).

② 석사학위과정(개정 2017.10.01.)

구 분	전공	선택	논문	계	비고
사회복지학과 유아교육학과 행정학과	24		PASS	24	논문대체시 6학점 추가이수
경영학과	24	6	PASS	30	

1. 경영학과(신설 2008.3.1.)

가. 주 전공분야에서 2과목 이상 이수하고, 타 전공 2개분야 이상에서 1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신설 2008.3.1.).

나. 학사학위가 경영학도가 아닌 비 전공출신자는 자기 전공분야 1과목, 타 전공분야 2과목을 학부과정에서 선수과목으로 이수하여야 한다(신설 2008.3.1.).

일반대학원학사관련시행세칙(2-2-2)

2. 본인 희망에 따라 졸업논문을 교과목 6학점으로 대체하여 이수할 수 있다.

제10조의 2 (학점교류) ① 본 대학원 재학생은 본 대학원과 교류협정을 체결한 타 대학교 대학원 및 본교 내 타 대학원(이하 “교류대학원”이라 한다)에서 소정의 절차를 밟아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개정 2005.09.1.).

② 교류대학원에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9학점이내로 한다(개정 2005.9.1.).

③ 교류대학원에서 학점을 취득하고자 하는 교류학생은 전공주임교수와 협의하여 수강할 교류대학원과 강좌를 결정하고 학점교류신청서를 작성하여 대학원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8.3.1.).

제10조의 3 (개설학점) ① 각 전공별 학기당 개설학점은 최저이수요구학점÷수업연한(이수학기)으로 한다.

② 교과목은 각 전공별 전체 재학생을 대상으로 통합 개설하며 재학인원이 40명 이상인 경우 2개 반을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수강신청) ① 학생은 매학기 수강신청 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8.3.1.).

② 과정별 수강신청학점은 최소 3학점, 최대 9학점으로 하되, 마지막 학기는 최대 9학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가능하다(개정 2008.3.1.).

③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수강한 과목의 학점은 인정하지 않는다.

④ 대학원생이 선수과목 수강을 위하여 학부에 개설된 과목을 수강신청 하기 위해서는 학부 수강신청 기간 내에 수강신청서를 작성하여 교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10.1.)

⑤ 타 대학원의 과목을 수강할 경우 본 과정의 최저이수요구학점을 충족하고 선택으로 이수할 수 있다(신설 2008.3.1.).

⑥ 본 대학 학부 학생이 대학원 개설과목 수강을 원할 경우 또는 대학원생이 학부의 개설과목 수강을 원할 경우, 전체 학기 합산 6학점 이내에서 수강신청 할 수 있다.

제11조의 2 (수강신청) ① <삭제: 2008.3.1.>

② <삭제: 2008.3.1.>

③ <삭제: 2008.3.1.>

제12조 (수강신청확인 및 변경) ① 수강신청과목의 변경은 수강신청 변경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개정 2008.3.1.).

② 수강신청자는 소정 기간 내에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수강신청 결과를 조회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하고, 학부 또는 본 대학원과 교류협정을 체결한 타 대학교 대학원 및 본교내 타 대학원의 강좌를 수강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강신청서를 작성하여 교학과

일반대학원학사예관한시행세칙(2-2-2)

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10.1.).

제13조 (수강과목 폐강) 이미 개설한 강좌라도 수강인원이 3명 미만일 경우 그 과목을 폐강할 수 있다.

제14조 (수강신청과목철회) ① 수강과목을 계속 이수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는 학기개시 후 8주째의 소정기간내에 담당교수와 원장의 승인을 얻어 그 과목을 철회할 수 있다.

② 수강과목을 철회했을 때는 다른 과목을 대신 신청할 수 없으며, 수강과목 철회 후 이수신청 학점이 최소수강신청학점 이상이 되어야 한다(개정 2008.3.1.).

③ 철회한 과목은 성적평가에서 제외되며, 학적부상에는 "W"(withdraw)로 기재된다(개정 2008.3.1.).

제14조의 2 (재수강) 성적등급이 "C+"이하인 다음 교과목에 대하여는 재수강 할 수 있다(신설 2008.3.1.).

1. 교과목명과 교과내용이 동일한 교과목(신설 2008.3.1.)

2. 교과내용은 동일하나 교과목명만 변경되었음을 전공주임교수가 확인한 교과목(신설 2008.3.1.)

제15조 (성적정정) 성적은 담당교수가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한 후 확정처리 한 이후에는 정정할 수 없다. 다만, 담당교수의 착오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음이 인정될 경우에는 소정기간 내에 성적 정정원을 교학과에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정정할 수 있다.(개정 2006.10.1.)

제15조의 2 (학점포기신청) ① 학점포기를 원하는 자는 학점포기원서를 정해진 기간 내에 대학원 교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8.3.1.).

② 학점포기는 최저이수요구학점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마지막 학기에 신청하며, 포기학점은 성적증명서에서 삭제한다.

제15조의 3 (성적평가) ① 교과목의 성적은 출석, 시험, 발표, 과제물등의 성적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② 출석성적은 20%이상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교과목당 실제 수업시간의 1/4이상 결석한 자는 학점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제15조의 4 (휴학자 성적 인정) ① 입대, 일반(질병휴학에 한함)휴학자 성적은 출석일수 12/15이상 수강한 자에 한하여 교과목 담당교수가 부여할 수 있다.

② ①항에 해당하는 학생은 교학과로 휴학자성적인정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장 등록, 휴·복학

일반대학원학사예관한시행세칙(2-2-2)

제16조 (등록) ① 학생은 매학기 정해진 기간 내에 소정의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을 납부하고 수강신청을 함으로써 등록이 완료되며, 재학생의 자격을 갖게 된다.

② <삭제: 2004.3.1.>

③ 개강 후 7일 이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허락을 받은 자는 해당 학기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06.10.1.).

④ 수업연한 초과자는 다음과 같이 신청학점에 따라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1. 신청학점이 1학점이상 3학점이하: 등록금의 2분의 1을 납부

2. 신청학점이 4학점이상 : 등록금의 전액을 납부

⑤ 외국어(어학)시험, 종합시험 등의 불합격으로 정규학기에 졸업을 못한 경우 관련분야에 소정의 응시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등록으로 인정한다.

제16조의 2 (분납제) ① 학생은 등록금을 분할 납부(이하 “분납”이라 한다) 할 수 있다.

② 분납을 원하는 학생은 정해진 기간에 재무회계과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입생, 편입생 및 학기 초과자는 분납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분납을 신청한 학생은 정해진 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며, 분납등록금을 정해진 기간에 등록하지 아니한 학생은 대학원학칙 제23조에 의거 미등록 제적 처리한다.

제16조의 3 (등록금 반환사유) 등록금의 반환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에 의하여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신설 2016.10.1.)

5. 본인의 질병, 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본 대학원에 입학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개정 2006.10.1.)

제16조의 4 (등록금 등의 반환기준) ① 당해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 입학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 전액을 반환한다.

② 당해학기 개시일 다음날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반환한다.

일반대학원학사에관한시행세칙(2-2-2)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학기개시일 30일 경과전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2.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전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3.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전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4.	학기개시일 90일 경과후	반환하지 아니함

③ <삭제: 2006.10.1.>

④ 1차 분납금만 납부한 학생이 자퇴하는 경우 등록금반환은 제2항과 같으며, 공제 후 1차 분납금이 반환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부족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 장학금 수혜자가 휴학할 경우, 장학금 수혜가 취소되며, 제2항에 의한 등록금 반환금액 산정 시에는, 장학금 상당액이 감면된 등록금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다만 장학금을 등록금 감면 외의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기지급된 장학금 전액을 학교에 반환하여야 한다.

⑥ <삭제: 2006.10.1.>

제17조 (휴학의 종류) 휴학은 일반휴학과 입대휴학, 창업휴학, 육아(임신·출산 포함)휴학으로 구분한다.

1. 일반휴학: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당해 학기 수학이 불가능할 때의 휴학
2. 입대휴학: 군입영 명령을 받았을 때 또는 지원입대로 인한 휴학
3. 창업휴학: 창업으로 인한 휴학
4. 육아휴학: 육아(임신·출산 포함)로 인해 수학이 불가능할 때의 휴학

제17조의 2 (휴학원 제출) ① 미등록으로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휴학원과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학기 개강 후 2주 이내에 교학과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입대휴학자와 휴학기간이 종료되는 복학예정자는 학기 개강 후 3주 이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일반(질병)휴학: 종합병원 진단서 등
2. 입대휴학: 입영통지서
3. 창업휴학: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등의 증명서 (다만 창업휴학에 관련된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4. 육아(임신·출산 포함): 임신확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② 등록을 마친 후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매 학기 개강 후 3주 이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휴학기간 경과 후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일반대학원학사예관한시행세칙(2-2-2)

1. 1개월 이상의 가료를 요하는 질병(종합병원 진단서 첨부)
 2. 창업으로 인한 휴학
 3. 육아(임신·출산 포함)로 인한 휴학
 4.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증명서 첨부)
- ④ 일반휴학 기간 중 군에 입대하는 경우에는 입대휴학원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의 3 (휴학기간) ① 일반휴학기간은 2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통산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군입대 및 육아(임신, 출산 포함), 창업으로 인한 휴학 기간은 예외로 한다.

- ② 학적부에 등록된 장애학생은 총장의 승인에 의하여 휴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등록을 마친 자로서 학기 개학일로부터 3/15이 경과된 후 휴학한 자의 등록금의 효력은 소멸된다.
- ④ 입대, 질병으로 인한 휴학에 해당하는 자는 수업일수 12/15이상 경과시에 등록금 효력이 소멸되며 해당 학기 수업은 모두 마친 것으로 인정한다.

제17조의 4 (휴학의 제한) 신입(편입), 재입학 학생에게는 해당 학기에 휴학을 허락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입대휴학, 4주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7조의 5 (복학) ①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는 수강신청기간 이내에 복학원을 교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입대휴학자는 전역증명서 첨부).

- ② 휴학기간 종료까지 복학 또는 휴학을 연장하지 아니하면 미복학제적 된다.
- ③ 입대휴학자가 개강일 이후 복학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역일이 총 수업일수의 5/15 이내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복학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당 학기의 출결은 복학자 본인이 책임으로 한다.

1. 복학신청서
2. 전역예정증명서
3. 본인서약서

제 5 장 외국인 학생

제18조 (입학) ① 학칙 제7조의 자격이 있는 외국인 학생의 입학은 정원의 10% 범위 안에서 정원 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6.10.1.).

- ② 외국대학을 졸업한 자는 대학원학칙 제7조에 의하여 국내에서 학사 또는 석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에 해당한다.

일반대학원학사에관한시행세칙(2-2-2)

- 제19조 (전형)** ① 외국인 학생 입학전형은 특별전형에 의한다. 다만 외국인 학생은 전공 분야 수학이 가능한 일정수준 이상의 한국어 사용능력이 있어야 하며, 본 대학원은 이를 평가하기 위하여 국립국제교육원 주관 한국어능력시험에서의 일정 성적(석사학위과정의 경우 3급, 박사학위과정의 경우 4급)이상의 취득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6.10.01.).
- ② 전형방법에 대한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정한다(개정 2016.10.1.).

제 6 장 외국어(어학)시험 및 종합시험

- 제20조 (외국어시험)** ① 외국어시험은 1학기부터 응시할 수 있다.
- ② 박사학위 및 석사학위과정의 시험과목은 전공영어로 한다.
1. <삭제: 2008.3.1.>
 2. <삭제: 2008.3.1.>
 3. <삭제: 2008.3.1.>
- ③ 본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와 응시료를 지정 기간 내에 대학원 교학 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재시험인 경우에도 같은 절차에 의한다(개정 2008.3.1.).
- ④ 외국어(어학)시험은 매 학기 학사일정에 따라 실시한다(개정 2006.10.1.).
- ⑤ <삭제: 2006.10.1.>
- ⑥ 원장은 각 과목별 1인 이상의 교수에게 출제와 채점을 의뢰할 수 있다.
- ⑦ 박사학위과정의 경우 영어 토플성적 550점(CBT 213점) 이상 또는 영어 토익성적 700 점 이상, 석사학위과정의 경우 영어 토플성적 500점(CBT 173점) 이상 또는 영어 토익성 적 630점 이상 취득한 자는 영어시험을 면제 받을 수 있다. 다만, 2년 이내의 성적만 인정한다.
- 제21조 (종합시험)** ① 박사학위(Ph.D.)과정의 응시자격 및 시험과목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10.01.).
1. 응시자격
 - 가. 신학과: 3학기 이상 이수하고 27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 나. 경영학과, 사회복지학과, 행정학과, 교육학과: 3학기 이상 이수하고 27학점 이상 취득한 자
 2. 시험과목(개정 2008.3.1.)
 - 가. 신학과: 시험과목은 4개 과목을 시행하되 필수(전공) 교과목 중 3개 과목, 선택 교과목 중 1개 과목으로 한다.

일반대학원학사예관한시행세칙(2-2-2)

- 나. 경영학과: 시험과목은 3개 과목을 시행하되 공통필수(경영학연구), 전공 1과목, 타 전공 1과목으로 한다(개정 2008.3.1.).
- 다. 사회복지학과: 시험과목은 4개 과목을 선택하여 시행한다.
- 라. 행정학과: 시험과목은 4개 과목을 시행하되 공통과목(연구방법론) 1개 과목, 전공기초 1개과목(전공별: 행정학전공-행정이론세미나, 부동산 및 빌딩관리행정전공-부동산개발이론연구, 이민정책전공-고급이민정책세미나), 및 전공선택 2개 과목으로 한다.
- 마. 교육학과 : 시험과목은 3개 과목으로 하되, 필수과목 1개 과목과 전공선택영역 중 2개 과목으로 한다.
3. <삭제: 2008.3.1.>
4. <삭제: 2008.3.1.>
5. <삭제: 2008.3.1.>
- ② 석사학위과정의 응시자격 및 시험과목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8.3.1.).
1. 2학기이상 이수하고 15학점이상 취득한 자(개정 2008.3.1.)
2. 시험과목은 전공과목 중 2개 과목을 시행하되 경영학과는 공통필수(경영학총론)와 전공 1과목으로 한다.
3. <삭제: 2016.10.1.>
4. <삭제: 2008.3.1.>
5. <삭제: 2008.3.1.>
- ③ <삭제: 2006.10.1.>
- ④ 본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와 응시료를 지정 기간 내에 대학원 교학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재시험인 경우에도 같은 절차에 의한다(개정2008.3.1.).
- ⑤ <삭제: 2006.10.1.>
- ⑥ 원장은 각 과목별 분야별 1인 이상의 교수에게 출제와 채점을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08.3.1.).
- ⑦ 과목당 시험시간은 50분으로 한다(신설 2008.3.1.).
- ⑧ 과목당 합격기준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으로 한다(신설 2008.3.1.).
- ⑨ 종합시험은 매학기 학사일정에 따라 실시한다(신설 2008.3.1.).
- 제22조 (재시험)** ① 불합격한 과목은 학사일정에 따라 재 응시할 수 있으며 과목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06.10.1.)
- ②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불합격하였을 경우 논문심사를 받을 수 없다(개정 2006.10.1.).

제 7 장 학위논문

제23조 (제출자격) ① 박사학위과정의 학위논문 제출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제10조에 의한 전공별 이수학점과 지정과목을 이수한 자로서 성적 평균평점 3.0 이상인 자(개정 2006.10.1.)
2. 외국어시험,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3. 학위논문계획서의 승인을 받아 2학기이상 논문지도교수의 논문지도를 받은 자
4. 논문지도비 및 논문심사비를 납부한 자

② 석사학위과정의 학위논문 제출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제10조에 의한 전공별 이수학점과 지정과목을 이수한 자로서 성적 평균평점 3.0 이상인 자(개정 2006.10.1.)
2. 외국어시험,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3. 학위논문계획서의 승인을 받아 1학기이상 논문지도교수의 논문지도를 받은 자
4. 논문지도비 및 논문심사비를 납부한 자

제24조 (논문지도교수 배정) ① 학위논문을 작성하고자 하는 자는 논문 주제(제목)를 결정하여 전공주임교수와 상의한 후 희망논문지도교수신청서를 작성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는다. 다만, 논문지도교수의 정년퇴임 시까지 잔여 임기가 박사과정논문은 2년, 석사과정논문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논문지도교수 신청은 박사과정은 4학기부터, 석사과정은 3학기부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7.10.01.).

② 논문지도교수는 본 대학교 전임교수로 하며, 박사학위 논문지도 학생수는 5명 이내로 한다.

③ 논문지도를 시작한 후에는 논문지도교수를 교체할 수 없다. 다만 지도교수의 부득이한 사유로 논문지도를 계속할 수 없을 경우 원장의 승인을 받아 교체할 수 있다.

제25조 (학위논문계획서) ① 박사학위과정의 학위논문을 작성하고자 하는 자는 학위논문계획서(A4 10매 내외)와 학위논문 연구윤리 준수확인서를 작성하여 4학기 3월 넷째 주 또는 9월 넷째 주까지 교학과에 제출한 후 심사위원장 주관으로 논문계획서발표회(Proposal)를 실시하여 학위논문계획서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 석사학위과정의 학위논문을 작성하고자 하는 자는 학위논문계획서와 학위논문 연구윤리 준수확인서를 3학기, 3월 넷째 주 또는 9월 넷째 주까지 교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논문제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논문 제목을 수정하여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일반대학원학사에관한시행세칙(2-2-2)

한다.

④ 원장은 제출된 학위논문계획서를 4월 첫째 주 또는 10월 첫째 주까지 승인하여야 한다.

제25조 2 (박사학위 논문제안 신청자격) ① <삭제: 2008.3.1.>

제26조 (논문원고제출) ① 학위논문작성자는 최저이수요구학점을 취득하고 학위논문심사를 위하여 소정기일 내에 논문원고 3부(박사과정 5부)를 지도교수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요청한다(개정 2008.3.1.).

② <삭제: 2008.3.1.>

③ 예비심사용 논문원고는 4월 둘째 주 10월 둘째 주, 본 심사용 원고는 5월 셋째 주 또는 11월 셋째 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10.01.).

④ 지도교수는 논문원고의 형식과 내용을 검토하여 심사를 받을 만하다고 판단될 때 논문원고와 논문심사요청서를 전공주임교수에게 제출한다. 이때 지도교수가 심사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신설 2008.3.1.).

⑤ 전공주임교수는 논문심사요청서를 검토한 후 정해진 기간 내에 교학과에 제출한다(개정 2017.10.01.).

⑥ 논문 심사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지도교수는 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다.

1. 박사학위 논문 심사위원은 본교 전임교수 3인과 외부심사위원 2인으로 하며 전공주임교수의 추천과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2. 석사학위 논문 심사위원은 본교 전임교수 3인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 심사위원 3인 중 1인은 외부심사위원으로 하되, 전공주임교수의 추천과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3. 외부심사위원은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외의 전문가로서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가. 타교 교원으로서 조교수 이상인 자

나.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해당 연구분야에 근무한 자

다. 기타 위 가, 나 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다고 대학원의 장이 인정하는 자

제27조 (논문심사 및 심사위원결정) ① 논문심사는 예비심사와 본 심사로 나눈다.

② 논문심사 방법은 논문심사와 구술시험으로 한다.

③ <삭제: 2008.3.1.>

④ <삭제: 2008.3.1.>

⑤ 전공주임교수는 지도교수 및 심사위원(장)과 심사일정(위치, 장소)을 협의하여 ‘논문심사일정보고서’를 교학과에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는다(신설 2008.3.1.).

일반대학원학사에관한시행세칙(2-2-2)

⑥ 지도교수는 심사용 논문(석사3부, 박사5부)을 심사위원(장)에게 배포한다(신설 2008.3.1.).

⑦ 논문심사위원장은 해당일정에 따라 논문심사를 주관하고 '논문심사결과보고서'를 교학과에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는다(신설 2008.3.1.).

제28조 (논문예비심사) ① 논문예비심사는 본 대학원 지정된 장소에서 심사위원 전원의 참석으로 1회의 예비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② 논문예비심사는 4월 넷째 주 또는 10월 넷째 주까지 실시한다(개정 2017.10.01.).

③ 논문심사위원은 논문제출자에게 예비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논문제출자는 예비심사에 참석하여 심사위원의 질의에 응답하여야 한다(개정 2006.10.1.).

④ 심사위원은 논문제출자의 논문주제 및 연구방법의 타당성, 논문내용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수정보완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⑤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논문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8.3.1.).

제29조 (논문본심사) ① <삭제: 2006.10.1.>

② 본 심사는 원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심사위원 전원의 참석으로 시행한다.

③ 본 심사는 예비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의 수정 보완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④ 논문 본 심사는 6월 둘째 주 또는 12월 둘째 주까지 실시한다(개정 2017.10.01.).

⑤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논문심사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3.1.).

제30조 (논문평가) ① 논문심사는 심사위원 2/3이상(박사학위 논문은 4인 이상)의 승인으로 한다.

② 구술시험은 논문심사와 병행하여 시행하며, 논문에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평가하고 "합격", "불합격"으로 판정한다. 이때 논문심사는 논문제출자의 출석 없이 시행한다.

③ 심사위원장은 논문심사결과보고서를 심사위원 연서로 작성하여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3.1.).

④ 학위논문작성자의 연구부정행위(위조, 변조, 표절 등)가 적발될 경우 논문취소, 학위철회, 졸업취소를 할 수 있다(신설 2008.3.1.).

제31조 (논문재심사) ① 박사학위과정의 논문심사에 불합격한 자는 차후 2회에 한하여 1학기이상 경과한 후 논문을 다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석사학위과정의 논문심사에 불합격한 자는 차후 1회에 한하여 1학기이상 경과한 후에 논문을 다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32조 (학위논문제출) 학위논문 본 심사에 합격한 자는 학위논문 최종본 원문 파일을

일반대학원학사예관한시행세칙(2-2-2)

dCollection에 탑재한 후 제출확인서 및 저작권동의서를 완성된 학위논문 5부와 함께 6월말 또는 12월말까지 대학원교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10.01.).

제 8 장 학위논문의 작성

제33조 (구비사항) 학위 청구논문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1. 논문표지(서식1)
2. 속표지(서식 2)
3. 인준서(서식 3)
4. 감사의 글(필요한 경우에 한함)
5. 목차(서식 4, 수표 또는 도표차례 포함)
6. 논문요약(2면 이내로 본문과 동일한 언어 사용)(개정 2008.3.1.)
7. 본문(논문 개요, 차례, 서론, 본론, 결론, 자료 및 참고문헌, 영문요약의 순서로 작성)(개정 2008.3.1.)
8. 참고문헌 : 논문작성에 이용한 참고문헌을 국내, 국외로 구별하여 저자의 성명을 가, 나, 다순 또는 A, B, C순으로 기재
9. 부록, 색인, 기타(필요한 경우에 한함)
10. 영문요약(서식5, 2면 이내로 함)

제34조 (분량) 한글 기준 줄 간격 200%로 작성하고 석사논문은 60페이지 이상, 박사논문은 150페이지 이상으로 한다.

제35조 (규격) 학위논문은 다음의 규격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용지: 70~100 g/m² 백색 또는 미색 모조지(양면 인쇄 시 90~100 g/m²)(개정 2008.3.1.)
2. 규격: 4×6배판(가로182mm, 세로257mm)
3. 인쇄방식: 단면 또는 양면 인쇄하되, 컴퓨터인쇄로 하며 활자의 크기는 11PT, 가로 34자 내외, 세로 26행 내외(줄간격 200%)로 함(개정 2008.3.1.).
4. 체분형식: 클로스양장
5. 표지색: 박사학위과정은 검정색 석사학위과정은 감색(개정 2008.3.1.)
6. 표지인쇄방식: 신명조체 22P 활자로 하고 금색으로 인쇄한다.
7. <삭제: 2008.3.1.>

제36조 (논문작성방법) 논문작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 대학원이 제시하는 논문작성법에 의한다.

일반대학원학사예관한시행세칙(2-2-2)

부 칙

(시행일) 이 세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16조, 제16조의 2, 제16조의 3, 제16조의 4)은 200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수업료 및 입학금반환에 관한 적용례) 이 세칙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의 시행일이 속하는 학기의 수업료 및 입학금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10조의 2)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변경 시행세칙(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 3, 제16조의 4,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 2,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1조, 제32조)은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2조, 제4조, 제7조, 제10조, 제10조의 2, 제11조, 제11조의 2, 제12조, 제14조, 제14조의 2, 제15조의 2,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 2,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32조)은 200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16조의4)은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2조, 제3조, 제10조, 제21조)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일반대학원학사예관한시행세칙(2-2-2)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21조)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21조)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2조, 제10조, 제16조, 제16조의4, 제21조, 제25조)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2조, 제21조)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21조)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13조)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20조)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7조)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2조, 제10조의 3, 제15조의 2, 제15조의 3, 제24조)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3조, 제21조)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일반대학원학사예관한시행세칙(2-2-2)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1조, 제6조, 제8조, 제10조, 제10조의 3, 제15조의 3, 제16조, 제16조의 2, 제16조의 3, 제16조의 4, 제18조, 제19조, 제21조, 제23조, 제32조)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4조, 제10조, 제21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32조)은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 세칙 중 제10조, 제21조는 2018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34조, 제35조)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15조의 4, 제17조, 제17조의 2, 제17조의 3, 제17조의 4, 제17조의 5, 제30조)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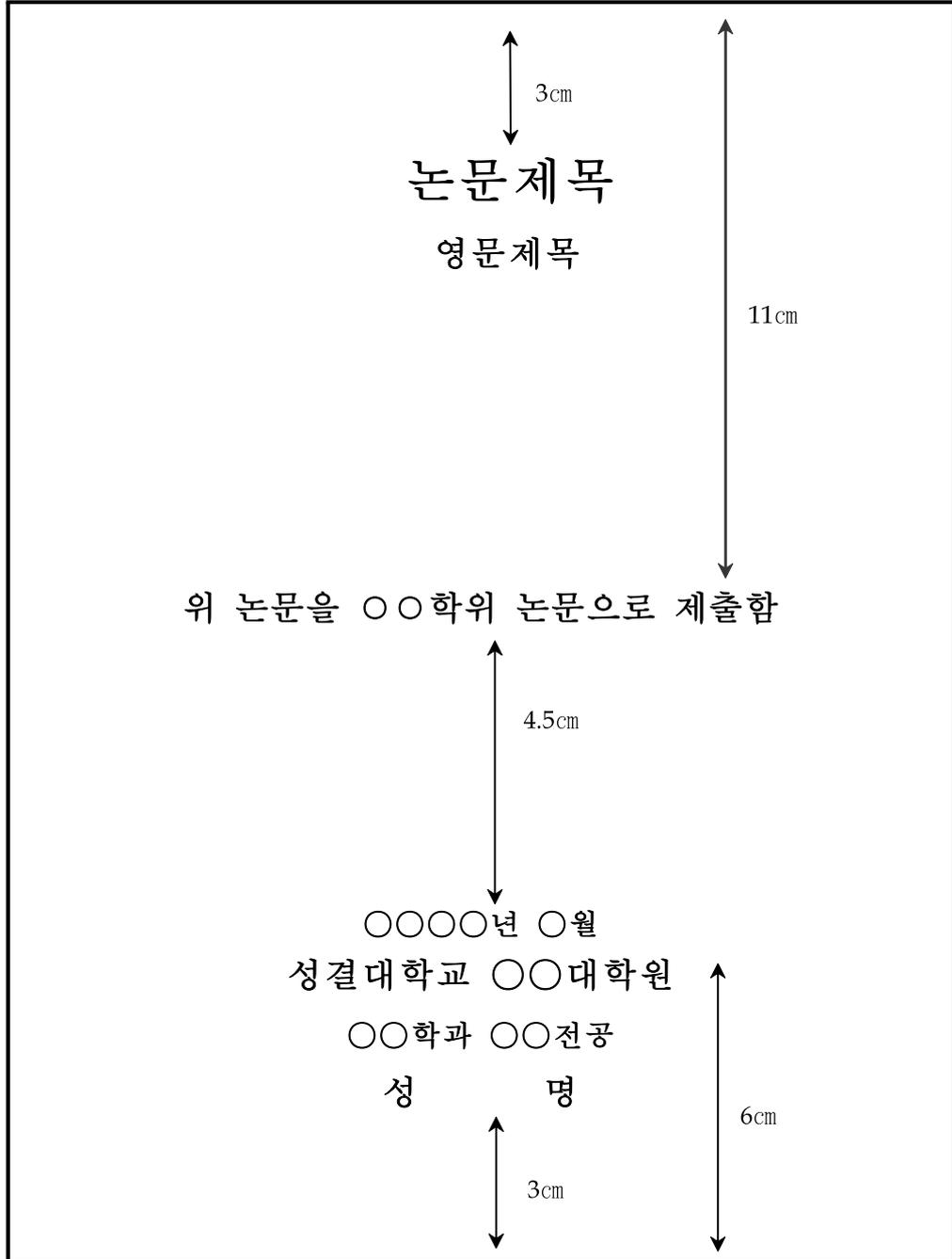
(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11조)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10조, 제21조, 제26조)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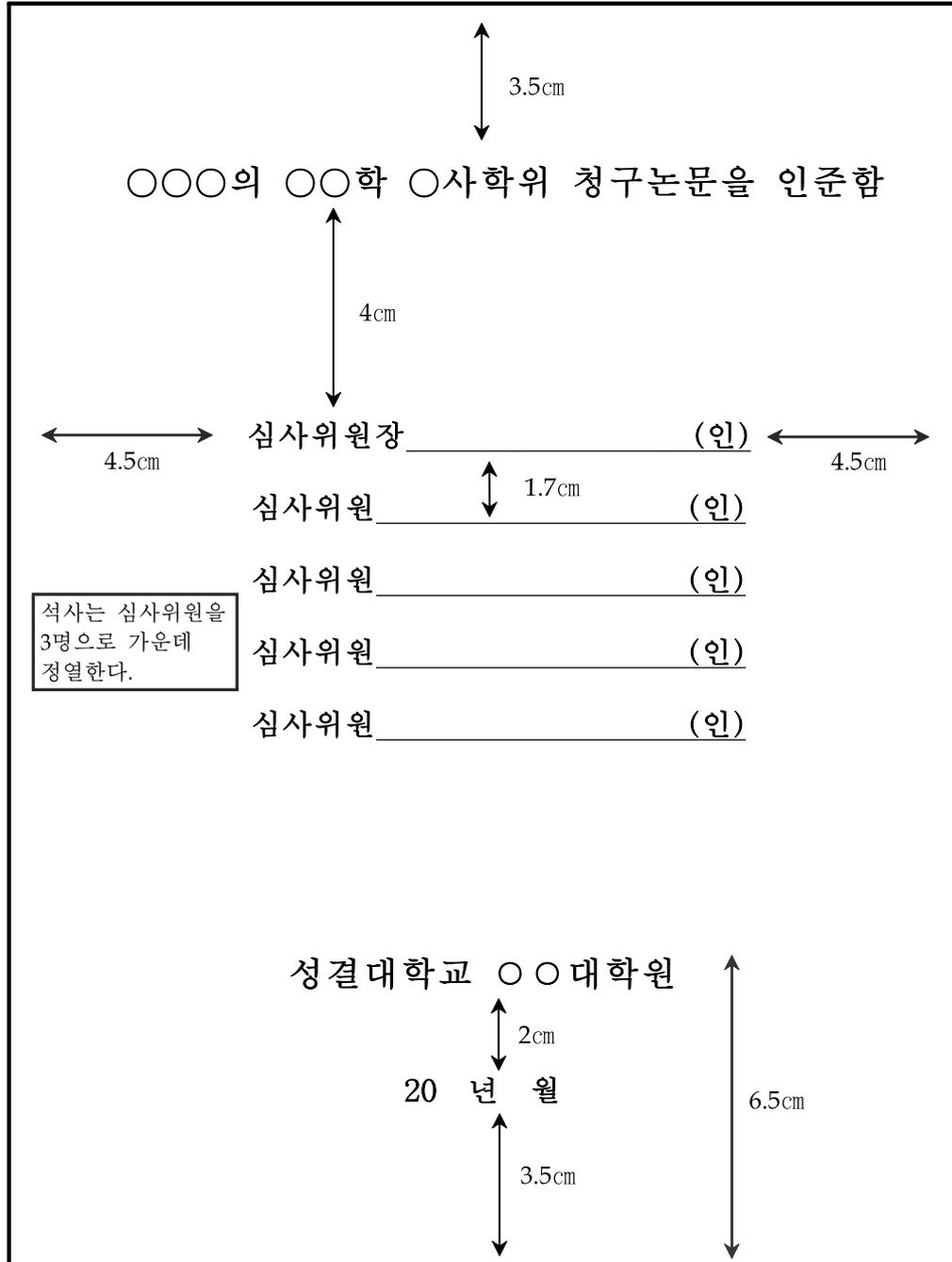
(경과조치) 이 개정 세칙(제10조, 제21조)은 2021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서식 2) 속표지 양식



일반대학원학사에관한시행세칙(2-2-2)

(서식 3) 인준서 양식



(서식 4) 목차양식

목차

표목차	ii
그림목차	iii
국문초록	iv
제1장 서론	1
제1절.....	1
제2절	4
1.	6
2.	8
제2장	10
제1절	14
제2절	19
1.	22
2.	25
참고문헌	30
부록(필요시)	32
ABSTRACT	34

(서식 5) 영문요약 양식

ABSTRACT

영문제목

부제

Hong(성) Kil dong(이름)

Department of xxx(영문으로 학과명), Major in xxx
Graduate School of SungKyul University, Anyang Korea

Advisor;Prof. oooo